



03

SPECIAL
THEME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과 기대효과

글 양희산 전주대학교 교수

1. 머리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이라 함) 중 특수건물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었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화재위험도 면에서 반드시 포함되어 안 전점점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 반영된 쾌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박상돈의원이 발의한 화재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이전에도 여섯 차례에 걸쳐 의원입법 개정 시도가 있었다. 여섯 차례 중 네 차례는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 등으로의 확대를 골자로 한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의 확대를 기도한 것이었다.

다중이용업소의 화재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시된 것은 지난 해 11월 14일 부산실내사격장 화재로 사망 15명, 부상 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이었다. 부산실내사격장 화재는 사망자 다수가 일본인 관광객이어서 대내외적인 주목을 받았고, 타인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자력이 없어 사격장 주인에 의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서 그 충격 또한 배가되었다.

03

과거에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과실에 의한 실화의 경우 민법 제750조의 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사실상 실화자가 타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었으나, 동 법률이 2009년 5월 8일자로 개정되어 경과실의 경우도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배상책임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자발적 보험가입 등 보상대책은 매우 미흡하여 보험가입률이 20% 내외에 지나지 않고 보험가입금액도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가 산업화되고 대형화·밀집화 현상이 심화되어 화재가 빈발하는 등 재난위험도가 날이 갈수록 더욱 커지고 있는 다중이용업소 등을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시키는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법률 개정이 실현되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금번 개정된 법률 내용을 살펴보고, 법률 개정 효과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화재보험법 개정 내용

박상돈의원이 발의하여 통과된 화재보험법 개정안은 화재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재보험의무화 대상의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1997년 1월 13일자에 화재보험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특수건물은 4층 이상의 건물과 국유건물·교육시설·백화점·시장·의료시설·홍행장·숙박업소·공장·공동주택 기타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때의 개정조치로 4층 이상의 건물 규정이 삭제되었고 대통령령의 규정이 개정되어 층수와 면적 등이 상향 조정되었다.

지난 13년 동안 다양한 의원입법의 시도와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특수건물의 정의는 국유건물·공유건물·교육시설·백화점·시장·의료시설·홍행장·숙박업소·다중이용업소·운수시설·공장·공동주택과 그 밖에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화재위험·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로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본 법의 개정에 따른 시행령의 개정방향은 법률에서 방향성을 정하고 있는 화재위험·면적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본원칙 아래, 과거 3년간 화재사고 건수 및 인명 피해를 기준으로 화재빈도가 높은 일정한 면적 이상의 건물을 대상으로 하되 우선 조치로 현행 의무가입대상 면적규모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현행 의무가입대상 확대는 추후 단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며,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감안하여 적절한 수준의 의무가입대상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확대될 의무가입 대상 특수건물은 크게 공유건물, 다중이용업소 및 운수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공유건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증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부속건물을 말한다.

둘째, 다중이용업소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영업·단란주점 영업 및 유흥주점 영업, 노래연습장업, 게임 제공업 및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목욕장업, 영화상영관, 실내사격장업인데, 이 가운데 실내사격장은 면적의 규정 없이 전체 실내 사격장을 의무가입 대상으로 하였고, 나머지 다중이용업소는 영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의 업소만을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으로 하였다.

셋째, 운수시설은 「도시철도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무시설로서 사용하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로 규정하였다.

금번 화재보험법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특수건물로서 다중이용업소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면 화재위험도 및 사회적 요구에 비추어 다중이용업소의 포함 대상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법률 개정은 다중이용업소를 특수건물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추후에 사회 환경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따라 시행령만의 개정으로 쉽게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아야 할 것이다.

현재 다중이용업소는 177,114개소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들 업소를 업종별로 보면 노래연습장·유흥주점·단란주점이 전체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면적별로는 300㎡미만이 전체의 84.8%(150,200개소)를 차지하고 있다. 층별로는 지상층이 62.5%(110,641개소), 지하층이 37.5%(66,473개소)를 차지하고 있다.

금번 시행령 개정 시 포함되지 않은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업소법에 의한 19개 업소 중 관리주체가 부재하거나 화재발생이 없는 업종은 제외되었다. 고시원, 전화방, 수면방 및 콜라텍업은

업소의 정의·관리를 규율하는 법률의 부재로 관리가 어려워 제외되었고, 비디오 소극장, 복합유통계업은 최근 3년간 화재발생이 한 건도 없어 제외되었으며, 재과점 및 산후조리원은 인명피해가 없으면서 화재발생빈도가 평균 이하인 업종인 관계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대하여 실내사격장은 부산 사격장 화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재위험과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였다.

3. 화재보험법 개정 효과

가. 사고유발자 배상자력 확보

화재보험법의 개정으로 의무가입 범위가 확대되면 그만큼 특수건물을 소유하여 사업을 하는 업주는 합리적인 사업운영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풀어서 설명하면 가격책정에 보험료를 반영하여 과도한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 비즈니스의 기본원리에 부합한 사업영위가 가능하고 법정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보험가입으로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는 다중이용업 등이 보험가입 등 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지 않아 재난 발생 시 피해자 구호 및 배상,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이 대부분 국가, 사회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다중이용업소 등의 의무보험 가입대상의 확대는 저비용의 보험료로 잠재적 가해자의 배상자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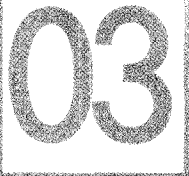
나. 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책임 실현

법인이든 개인이든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지속경영을 목표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런 이치이다. 사업자는 항상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자신의 사업을 보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위험관리에 힘써야 한다. 의무보험가입 확대 대상에 포함되는 특수건물주는 전문성을 가진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안전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다양한 컨설팅을 통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자기 책임을 실현함으로써 국제적인 선진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

다중이용업소 등의 의무보험가입 대상 확대는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결국 국민들의 사회안전도 평가 지수상향에 기여할 것이며 업주는 소비자 위주의 사업운영으로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은 공유건물, 다중이용업소 및 운수시설의 “고객”이다. 특히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자신과 그 가족도 다른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한 사람의 고객



이며 소비자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가 화재사고에 대비하여 배상자력을 갖추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바램이다.

라. 보험시장 확대의 부수적 효과 실현

금번 화재보험법의 개정은 보험시장 확대라는 부수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되는 특수건물 수는 5,147개소로 그리 큰 규모는 아니다. 보험료의 증수 효과도 53,328천원에 지나지 않는다.(표 참조) 그러나 업종의 확대와 다중이용업소가 의무대상에 명시됨으로써 보험회사의 마케팅 활동에는 상당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다중이용업소의 업주로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위험도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자발적 위험관리 차원에서 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증대되고 보험회사도 이러한 점을 부각시켜 보험가입을 적극 유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보험회사의 일반보험 시장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㉞

〈표〉 화재보험법 의무가입대상 확대에 따른 보험료 증가규모

구분		증가대상 건물 수	신배책 보험료(원)	건물 보험료(원)	합계 보험료(원)	총합계 보험료 (천원)
다 중 이 용 업 소	목욕장 (1,000㎡ 이상)	493	43,990	3,975,421	4,019,411	1,981,570
	영화상영관 (3,000㎡ 이상)	21	219,157	9,373,016	9,592,173	201,436
	사격장(전체)	12	36,688	6,370,099	6,406,787	76,881
	노래연습장, PC방, 게임제공업,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원유용주점 (바닥면적의 합계 2,000㎡ 이상)	1,312	86,213	9,154,216	9,240,428	12,123,442
소 계		1,838	386,048	28,872,752	29,258,799	14,383,328
공유건물 (1,000㎡ 이상)		2,776	36,173	516,334	552,507	1,533,759
지하철역사 (3,000㎡ 이상)		533	98,179	23,418,535	23,516,714	12,534,408
합 계		5,147	520,400	52,807,620	53,328,020	28,451,496